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계획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2021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보건복지부장관

1. 지정신청 기간

구 분	신청 접수기간
제1차	2021. 1. 25.(월) 09:00 ~ 1. 29.(금) 18:00까지
제2차	2021. 5. 03.(월) 09:00 ~ 5. 07.(금) 18:00까지
제3차	2021. 8. 23.(월) 09:00 ~ 8. 27.(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등은 추후 업무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공고

* 접수기간 이후 접수불가 (마감일 18시 정각 이후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내 조기 접수요망)

☞ 모든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신청일 이후 보완·보정 불인정)

2.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 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재단법인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이상 ‘장애인복지’ 관련 고유 목적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표10] 2호 라목의 ‘**직업재활시설**’
- ☞ 신청 자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5호)」 제2조제4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이하 ‘심사기준’)” 의 “1. 신청자의 적격성” 참고(「붙임1 (12p)」)

3. 신청 방법

- 전산망을 통한 신청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① 신규 생산시설 지정 신청의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 → 우선구매제도안내 탭 하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식” 다운로드 · 작성

⇒ 작성된 신청서를 아래 메뉴 경로대로 접속하여 제출(제출 전 ‘신청 인증번호* 등록’ 필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규 지정 신청시설에 해당(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시 생성)

- (메뉴경로) www.goods.go.kr → 우선구매제도 안내 → 생산시설 지정 → 지정신청 신청서 제출
- (제출순서) 로그인(신청 인증번호로 로그인) → 심사기준 안내 동영상 시청 → 신청서 작성(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방법은 ‘생산시설 지정’-‘지정신청서 제출’ 메뉴의 “신청절차 안내 도움말 열기” 참고

② 기 지정 생산시설의 신규 품목 추가지정 신청의 경우

- (메뉴경로) 우선구매관리시스템 → 지정관리 → 지정품목 추가 신청
- (제출순서) 로그인(시설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 주의사항

- 신청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인편·팩스 불가
- 첨부서류 미제출·누락, 제출 거부 등의 경우 신청이 반려 될 수 있음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제출서류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업무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기 지정 생산시설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 지정 신청 대상임 (심사기준 2-다-2), 4-나-2)에 따름)
- 이미 지정받은 품목의 하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신규 지정이 불필요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 (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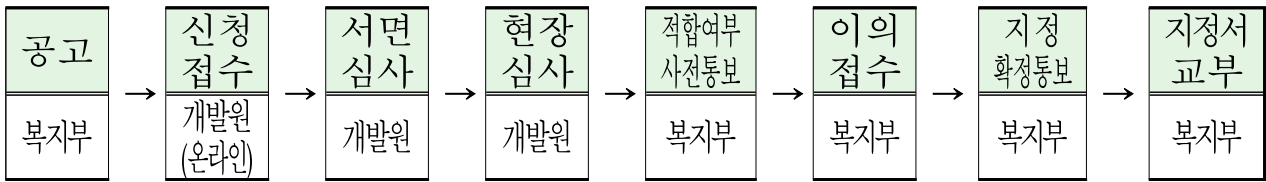
- 2020.5.27. 개정된 심사 기준이 적용됨에 유의

- * 단, 본 지정심사 계획 공고 후 법령·고시·지침 등이 추가 개정·시행된 경우 동 개정 내용에 따름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현장심사는 서류심사 적합 시설에 한하여 실시함

○ (심사절차)



* '적합' 사전통보 시설이라도 확정통보 전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5. 지정 신청서류

- 아래 **법정 구비서류**와 **추가 구비서류**는 신청 시 **동시 제출 필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 필수
- * 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그대로 기재 필요

구분	증빙서류	유형(필수여부)	다운로드 사이트 등	세부사항
법정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 장애인복지단체(필수)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필수)		
	◦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필수)		
	◦ 정관 또는 규약	◦ 공통(필수)		◦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정관 제출 - 원본 스캔하여 제출 - 법인 및 임직원 날인 필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규약(운영규정) 제출 - 원본 스캔하여 제출
	◦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 공통(필수)		◦ 지정 신청일 기준 급여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 산정방식 제출 -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지정심사 신청양식	◦ 공통(필수)	◦ 콤드래 홈페이지 - https://www.goods.go.kr ◦ 하단 참조 (붙임 2~7)	◦ 신청서, 근로자현황 한글파일 그대로 제출 ※ 직접생산장비목록, 원부자재목록, 생산공정도 및 직무배치도는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추가서류 신청자의 적격성	◦ 법인등기부등본	◦ 공통(필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제출 - 원본 스캔하여 제출 - 임원, 분사무소, 말소내역에 관한 사항 필수 출력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운영 법인의 등본 제출(법인이 없는 개인 운영 시설의 경우 생략)

구분	증빙서류	유형(필수여부)	다운로드 사이트 등	세부사항
	◦ 법인의 장애인복지 관련 고유목적사업 실적 내역	◦ 장애인복지단체(필수)		◦ 소관 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한 사업실적(2개년도) 제출 ◦ 법인 산하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이 2년 이상 운영 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실적으로 인정.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근로자 관련	◦ 지정·재지정심사 체크리스트	◦ 공통(필수)	◦ 꿈드래 홈페이지 - https://www.goods.go.kr	◦ 엑셀(Excel)파일 제출 - '근로자 현황' 작성 시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가나다 순)와 동일하게 작성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공통(필수)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 신청일 기준 근로자 현황과 동일한 명부 제출(가나다 순) - 원본 스캔하여 제출
	◦ 전체(장애인·비장애인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서	◦ 공통(필수)	◦ 생산시설 자체양식	◦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가나다 순)로 스캔하여 제출
	◦ 장애인증명서	◦ 공통(필수)		◦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가나다 순)로 스캔하여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불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통(필수)	◦ 꿈드래 홈페이지 - https://www.goods.go.kr/	◦ 대표자를 포함 전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뒷자리 포함) ◦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가나다 순)로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
	◦ 출퇴근 기록부(최근 1개월)	◦ 공통(필수)		
	◦ 급여대장, 급여 이체내역, 급여이체 통장 사본(최근 1개월)	◦ 공통(필수)		◦ 통장 사본: 생산시설 명의의 통장의 앞면(예금주, 계좌번호 기재된 면) 사본 제출
	◦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신청 및 승인 공문 및 상세(붙임 양식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임면보고 승인 공문 (지자체→생산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 인건비 예산신청 공문의 경우, 종사자 성명과 직위가 표기된 '인건비 산출내역' 제출 필수 ◦ 인건비 예산신청 내역이 없는 경우, 각 종사자별 임면보고 공문 제출 필수 [참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기준 4. 직원 배치기준에 따름 ◦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구분	증빙서류	유형(필수여부)	다운로드 사이트 등	세부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나. 4) 직업재활시설 기준 에 따름
	◦ 품목별 전문기술인력 이력서(필수), 자격증 (해당시)	◦ 공통(이력서는 필수)		◦ 신청품목 관련 자격증만 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증 또는 근거 자료(공인 경력증명서) 등 제출 - 타 법령상 자격사항이 없는 품목의 경우, 이력서만 제출
	◦ (해당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 공통		◦ 인가 공문 및 첨부(인가 근로자 명부) 제출 ◦ 신청 후 인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등 관련자료 제출
추첨서류 직접생산 관련	◦ 사업자등록증명	◦ 공통(필수)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제출 - 원본 스캔 제출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서	◦ 공통		◦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제출 - 원본 스캔 제출
	◦ 일반건축물대장	◦ 공통(필수)	◦ 정부24 - https://www.gov.kr	◦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제출 - 원본 스캔 제출 - 소유자 현황 표기 필수.
	◦ (해당시) 생산시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공통		◦ 통장 사본: 생산시설 명의의 통장의 앞면(예금주, 계좌번호 기재된 면) 사본 제출
	◦ (해당시) 생산시설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			
	◦ (해당시) 생산시설 사업장 월 임대료 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최근 1개월)			
	◦ (해당시) 생산공장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 임대인이 사업자 미등록자인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必
	◦ (해당시) 위.수탁협약서	◦ 직업재활시설 ◦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 위.수탁재산 목록표 등 관련서류 일체
	◦ 전기요금 고지서,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최근 1개월)	◦ 공통(필수)		◦ 전기요금 납부확인증 미인정 ◦ 통장 사본: 생산시설 명의의 통장의 앞면(예금주, 계좌번호 기재된 면) 사본 제출

구분	증빙서류	유형(필수여부)	다운로드 사이트 등	세부사항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또는 고정자산관리대장 또는 생산설비·검사설비 구입 증빙 서류	공통(필수)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또는 고정자산관리대장 제출 시 - 회계사무소/세무사무소 날인 후 스캔 제출 - 최근 신고(발급)서류 제출 - 직접생산 관련 각 설비의 명칭 및 수량이 확인되어야 함 - 생산설비 구입 증빙 서류 제출 시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또는 고정자산관리대장 발급 불가 시 제출 - 설비 구입 관련, 각각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통장 사본 등 일체 제출
	(해당시) 생산·검사설비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생산·검사설비 임차보증금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해당시) 생산·검사설비 월 임차료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공통		통장 사본: 생산시설 명의의 통장의 앞면(예금주, 계좌번호 기재된 면) 사본 제출
	(해당시) 기증 및 공증서	공통		- 생산공장 및 설비 등을 기증 받은 경우 - 단, 기증받은 설비 등의 가액이 총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기증내역서 제출 필수)
	- 신청품목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필수 인허가 서류 (예시) - 비누,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 물티슈, 화장품: 화장품제조업 신고증 - 조명기구: KC인증서류, 검교정성적서 등 - 제과제빵, 김치: 영업신고증 - 청소: 위생용역업신고증 - CCTV: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 등 - 광고판: 옥외광고업등록증	공통		<u>필수 인허가는 신청일 이전 획득해야 함</u> - 관련법령에 따른 필수인허가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공통(필수)	- 꿈드래 홈페이지 https://www.goods.go.kr - 하단 참조 (붙임 4)	

6. 지정 시 유효기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기 지정 생산시설이 품목을 추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지정품목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만료일 부여

7. 사전교육

- (사전교육 대상) 지정신청 시설·단체 등
- (교육 내용) 심사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일정 등 안내
- (교육 신청) 꿈드래 홈페이지에서 차수별 신청기간에 온라인 신청
 - * (신청메뉴 경로)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 → 우선구매제도안내 탭 → 생산시설 지정 → 지정심사 사전교육 신청 → 신청서 작성

< 사전교육 일정 >

구 분	접수기간	교육실시	장소
제1차	2021. 1. 04.(월) ~ 1. 08.(금)	2021. 1. 15.(금) 예정	*이룸센터(잠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제2차	2021. 3. 29.(금) ~ 4. 02.(금)	2021. 4. 07.(수) 예정	
제3차	2021. 7. 19.(월) ~ 7. 23.(금)	2021. 7. 28.(수) 예정	

- * 사회적거리두기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될 수 있음
- * 교육방법 등 실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 → 우선구매제도안내 탭 → 공지사항 참고

8.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044-202-3324/3325, Fax : 044-202-3962)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 : 02-3433-0633, 0635, 0664, 0693, 0715, 0726, 0734, 0751, 0765, 0776, 0781, 0784, 0787, 0790 Fax : 02-416-956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로 한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지정 및 재지정 심사에 적용하며, 지정(이하, 재지정을 포함한다.)받은 생산시설은 지정 이후에도 이 기준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붙임>과 같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용) ① 제2조제1항제4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준용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설비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적절한 직무 배치와 공정관리를 통해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제4조(직접생산 확인증명)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

제5조(품목에 따른 중증장애인고용요건의 특례)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 청사관리, 공공시설관리, 기타 공공기관이 행하는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청소용역,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 서비스

2. 불법행위단속, 행사진행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경우 그 승계 인원의 10/100 이상의 장애인근로자(생산시설 소속의 기존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하지 아니함)를 추가 고용한 때에는 당해 용역계약 수행기간에 한해 제2조제1항 제2호의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기준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0-105호, 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목별 심사기준의 적용례) 중증장애인 정의규정을 제외한 붙임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 신청부터 적용한다.

1. 신청자의 적격성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나.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아래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1)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소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된 법인
- 2) 법인 정관 상 ‘장애인 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근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3)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고유목적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0] 2호 라목의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근로자 고용

가.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정의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나. 근로계약 체결

- 1) 생산시설 근로자는 사업주인 법인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산시설 근로자 인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다만, 아래 ‘라), 마) 목’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장애인인 경우 근로자 인원 산정에 포함할 수 있음
-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배치기준에 따른 시설 직원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등에 따라 생산시설에 파견된 근로자
- 다) 일용근로자

- 단,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초과시점부터 근로자에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하고, 초과시점 이후 사용시간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포함함

라) 위 가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의 전부를 지원받는 근로자

마) 생산시설에 소속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상담, 직무분석 및 훈련지원 등을 위해 배치한 직업재활 지원 인력

3) 생산시설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운영법인 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포함함)이 생산시설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 사람은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로 보아 인원 산정에 포함한다.

4) 생산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는 생산시설에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 또는 기관·단체에 겸직하거나 기타의 영리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겸업을 허용할 수 있다.

가) 생산시설 운영법인의 대표자 겸직 또는 기타 비영리 기관·단체의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겸임

나) 생산시설과의 근로계약 시간 이후 종사하는 시간제 일자리(장애인근로자에 한함)

다) 자기소유의 부동산 임대업, 농업, 장애인소득보장 정책에 따른 자판기업·복권판매업 등 생산시설 직무의 성실성을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비상근 영리업무의 겸업(단, 이 경우에도 생산시설의 지정품목과 유사·동일 품목 또는 업종인 경우는 겸업 불가함)

5) 일용근로자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생산품의 납기준수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연간 총 사용일수(누적 연인원 기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6)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채용 및 근태관리,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 보유하고 상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단,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근태 기록은 아래 '3항 가목'의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율' 계산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다. 장애인근로자 고용 인원

1) 생산시설은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 (전체 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단, 최근 1개월 간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해당 근로자 수를 차감 적용함.

·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인원 적용(명) : (월 근로시간/60시간)× 1명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하나의 생산시설이 둘 이상의 품목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위 최소 고용인원 요건을 준수하면서 각 품목별로 최소 5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단, 둘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주소가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최소 고용인원과 품목별 장애인근로자 배치 인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3) 장애인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등으로 인해 고용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인원을 평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에도 지정(재지정을 포함함)이 된 이후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4) 공공기관과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고용 승계한 경우로서 당해 용역 수행기간 동안 본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기준의 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생산시설은 그 승계 인원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추가 고용하여야 한다.
 - 위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추가 고용은 고용을 승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이때, 기존의 생산시설 소속 장애인근로자는 추가 고용인원에 포함할 수 없으며 승계 당시 생산시설 소속 장애인근로자의 수는 당해 용역 수행기간 동안 임의로 감축할 수 없음

라. 장애인근로자 고용 비율

- 1) 생산시설은 전체 근로자의 70/10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비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함
 -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전체 상시 근로자 수 × 100
 - 위 다항 4)호에 따른 추가 고용 장애인의 비율은 고용승계 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적용함
- 2) 위 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60/100(심사기준 제5조에 따른 품목은 30/10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고용비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함
 -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전체 장애인근로자 수 × 100
 - 생산시설이 본 고시 제5조제1항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 특례를 적용받는 품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생산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해당 품목에 배치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을 각각 산정함
 - 위 다항 4)호에 따라 추가 고용 장애인에 대한 중증 비율은 동일 하게 적용함

마. 장애인근로자 처우 및 안전 등

(본 항목의 기준은 지정 이후 및 재지정심사 시 적용함)

- 1) 장애인근로자의 처우
 - 가) 생산시설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항(임금, 퇴직급여,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시간외근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생산시설은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

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작업능력 및 생산시설의 매출·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임금은 근로자 명의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체불해서는 안된다.

다) 생산시설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단,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라)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매출수익금 등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 및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안전 등

가)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명백히 위험하거나 유해(有害)한 직무에 장애인근로자를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 인체에 유해한 원부자재를 주로 사용하거나 작업공정 및 설비의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의 이동 및 작업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생산시설의 임직원은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착취·학대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개별 법령 등에서 정한 예방조치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생산시설의 장과 직업재활 지원 인력은 지정 이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장애인근로자 생산참여

가.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율

1)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지정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치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의 50/100 이상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근로시간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약한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생산과정 참여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함

· 장애인근로자 생산과정 참여율(%) :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1개월 간 근로시간 합계/전체 근로자의 1개월 간 근로시간 합계) × 100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장애인근로자 직무배치

1)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직업적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시설

의 직무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직무에 장애인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생산시설은 소속 근로자의 개인별 직무기술서 및 공정 배치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함

2) 생산시설은 직무의 분석 및 설계,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직무 배치·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업재활 지원 인력'을 두어야 한다.

- 단,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운영법인 소속의 전문가 등이 이를 겸직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인의 대표는 해당 직원의 겸직 발령을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임금 등은 법인이 지급함)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 생산

가. 관련 인허가 등의 획득 및 기재 사항의 일치

1) 생산시설의 지정 품목의 제조·생산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개별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인허가(인가, 허가, 면허, 신고, 등록, 지정 등 명칭을 불문함)가 있는 경우 신청일 이전까지 이를 획득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운영법인 명의로 인허가 된 경우는 생산시설이 획득한 것으로 봄

2) 생산시설 관련 정보와 생산시설이 제출한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의 기재사항(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 단, 기재 내용의 일부가 다른 경우로서 해당 시설이 생산시설 명의임을 공신력 있는 서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나. 사업장의 보유

1) 생산시설은 지정 생산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업장(공장, 제조업소, 매장, 창고 등 부대시설, 사무실, 훈련 공간, 후생복지시설 등 생산시설이 사용하는 제반 공간을 포함함)을 보유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은 생산시설(또는 운영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법인 명의 임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 임차를 포함함)하여 사용한다.

나) 사업장을 기증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기증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하며 건물 등기부에 생산시설(또는 운영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하나의 생산시설이 여러 소재지(주소 또는 지번을 기준으로 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단, 지적도상 연접해 있는 경우는 하나의 소재지로 볼 수 있음

3) 생산시설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임차 사용 중인 사업장에 대해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계약서가 있더라도 임차료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무상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함)

- 단, 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임차한 경우 또는 이들로부터 생산시설이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는 직접생산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사업장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생산시설의 지정품목과 유사·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유사·동일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다) 생산시설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등록 되었거나, 등록사항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 단, 부지 또는 건물의 특성상 여타 사업장의 공동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생산시설의 사업장 공간 및 출입문 등이 제 3자의 사업장(사무실, 부대시설 등 일체의 공간을 포함함)과 명확히 분리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시설이 아닌 제 3자(생산시설이나 운영법인의 임직원 개인을 포함함)가 부담하는 경우

- 단, 생산시설 운영법인이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쳐 부담한 경우는 생산시설이 부담한 것으로 봄

다. 생산 설비 등의 구비

1) 지정 품목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생산시설은 '중소기업자 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제시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단,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는 별개로 함

2) 생산시설이 보유한 생산설비·장비(검사 설비·장비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명의의 구매 또는 획득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가) 생산설비 등을 기증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기증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 서류가 있어야 한다.

- 단, 기증받은 설비 등의 가액이 총 100만원(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 시가를 적용할 수 있음) 미만인 경우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생산시설이 획득·보유한 설비 등은 생산시설의 자산대장 등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설비·장비의 실제 보유 여부 및 사용 여부, 정상적인 가동 여부 등은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함

3) 생산설비·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계약서가 있더라도 임차료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무상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함)

- 단, 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임차한 경우 또는 이들로부터 생산시설이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는 직접생산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다) 임차한 생산설비 등을 다른 업체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전문기술인력의 배치

1) 생산시설은 지정 품목의 생산·판매 등에 있어 개별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전문기술인력은 생산시설의 대표자 등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로 생산시설 상근을 원칙으로 함

2) 전문기술인력의 상근 여부 및 관련 설비 등의 취급 가능 여부 등은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마. 생산 공정의 준수

1) 지정 품목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생산시설은 ‘중소기업자 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제시한 공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는 별개로 함

2) 위 호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매출 확대 및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정 생산시설 간 생산공정(필수공정을 포함함)의 일부를 외주·하청하여 협력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공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단, 이 경우에도 다른 생산시설에 외주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비용은 총 계약금액의 80/100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완제품의 생산

1) 생산시설은 전체 근로자 수 및 보유설비,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능력 및 근로시간 등을 반영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서’를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당해 생산시설의 연간 생산능력(산출 가능한 완제품·서비스의 물량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2) 생산시설은 지정받은 품목에 대해 생산시설 명의로 완제품을 생산(서비스 제공을 포함함)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지에 생산시설 명의의 제조·판매원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단, 품목의 특성상 명의 표기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함

- 다른 업체 등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 포장 공정만 수행하여 생산시설 명의로 납품하는 것은 완제품 생산으로 보지 않음

3)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 및 외주 등은 실제 생산실적(생산량, 계약물량, 재고 물량 등)과 부합하여야 하며, 이는 매입·매출 관련 서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사. 독립 회계의 운영 등

(본 항목의 기준은 지정 이후 및 재지정심사 시 적용함)

1) 생산시설의 회계는 운영법인의 회계와 구분해 운영하며,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부자재 구입 또는 외주와 관련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법인 등을 포함함) 한 명과의 연간 매입 거래액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시설의 연간 총 매입액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생산시설 및 운영법인의 임직원

나) 생산시설 및 운영법인의 임직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함)

다) 생산시설의 사업장 또는 설비 등의 임대인

- 3) 장애인복지단체인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얻은 매출수익금을 운영법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법인에 전출할 수 있으나 이는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총액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

- 생산시설이 매출수익금을 운영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전출금에 대한 장애인복지사업 활용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4) 생산시설은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의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생산시설의 재무제표는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되거나 검증되어야 함

- 생산시설의 재무제표는 연 1회 이상 생산시설(또는 운영법인)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5)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아래 자료 등에 대해 통계 및 장부 등을 작성·보유하고 상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생산 및 재고, 원부자재 수급, 외주 및 하청, 계약, 판매 및 유통, 자산 및 부채, 세입·세출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5. 2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 성명을,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산시설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설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 수	총 명 (장애인: 명, 중증장애인: 명)	
	생산품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수행기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근로자 현황

○ 시 설 명: 아무개보호작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품목: 사무용지, 인쇄물

○ 작성일: 0000. 00. 00.

연 번	①성명	주민 등록번호 (000000-0)	최초 근로 계약 (00-00-00)	②장애관련			③직무		④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간			⑤월별급여 (4대보험 공제 전 급여)(단위: 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간	타 제도 지원 (사업명)	품목 기술 인력 (Y/N)
				주 장애	부 장애	종합 장애정도	담당 직무	배치 품목	일	월 (주휴 포함)	실제 공정 참여 시간	()월	()월	()월			
1	안00	000000-1	20-1-1	-	-	-	시설장	-	8	209	209	3,000,000	3,000,000	3,000,000	-	장애인일자리 사업 일반형 (시간제)	N
2	박00	000000-1	20-1-1	-	-	-	직업재활 지원인력	사무용지	8	209	209	3,000,000	3,000,000	3,000,000	-		Y
3	이00	000000-1	19-10-10	-	-	-	직업훈련 교사	인쇄물	8	209	209	2,250,000	2,250,000	2,250,000	-		Y
4	김00	000000-2		지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직접생산	사무용지	4	104	87	900,000	900,000	900,000	-		N
5	박00	000000-2		지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직접생산	인쇄물	4	104	87	200,000	200,000	200,000	2020-1-1.~ 2020-12-31		N
6	김00	000000-2		정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직접생산	사무용지	4	104	87	900,000	900,000	900,000			N
7	최00	000000-2		자폐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가공	-	4	104	87	900,000	900,000	900,000			N
8	임00	000000-2		-	-	-	영업	-	8	209	209	2,800,000	2,800,000	2,800,000			N
9																	

※ 작성방법

①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내용과 동일한 순서로 기재

② 장애인증명서 상 기재되어 있는 주장애, 부장애, 종합장애정도 기재, 비장애인 경우 “없음”

③ 근로계약서 상 담당직무 기재

- 근로자가 생산품목 직접생산에 참여할 경우 - 직접생산 / 단순임가공 참여할 경우 - 임가공/ 영업담당-영업 / 사무·행정·회계 업무- **사무·회계**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 4. 직원 배치기준 직무기재

④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일 근로시간/ 월 근무시간(주휴포함) 기재/ 실제공정참여시간: 근로계약시간 - 지정신청 품목 외 시간(임가공, 미지정품목, 훈련프로그램시간 등)

⑤ 급여명세서 상 반드시 **4대 보험 공제 전 급여**로 입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기본현황	생산시설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지정번호			지정품목
	운영법인명			법인대표
	법인주소			연락처
	운영법인의 주요목적사업 (정관 기준)	• • •		
연간 매출 및 수익 예상	연간 최대 생산 가능 능력 ¹⁾		연간 예상 판매량 ²⁾	
	(예시) 마스크: 2,000만장 배전반: 10식		(예시) 마스크: 400만장 배전반: 5식	
	연간 예상 매출액 ³⁾			
	(예시) 30,000만원			
연간 매출 및 수익 예상	연간 예상 매출액 ⁴⁾		연간 예상 판매량 ⁵⁾	
	(예시) 25,000만원		(예시) 마스크: 1천만원 배전반: 0원	
	연간 생산시설 간 외주·하청 예상 금액 ⁵⁾		연간 일반기업 대상 외주·하청 예상 금액 ⁶⁾	
	(예시) 마스크: 0원 배전반: 1천만원		(예시) 마스크: 0원 배전반: 1천만원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 목적사업 사용계획 ※ 장애인복지 단체만 작성	구분		수익금 사용 대상 사업계획	
	주요 목적 사업 ⁶⁾	합계	4개 사업	
		소계	2개 사업	
		목적사업① (예시)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예시)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소개 리플렛 제작	
		(예시)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예시)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소개 리플렛 제작	
		소계	2개 사업	
		목적사업② (예시)장애인 인식개선	(예시)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사업 부상품 지원	
	(예시)장애인 인식개선	(예시) 대국민 인식 조사사업		
	기타 ⁸⁾	소계		
사용액 ⁷⁾ (만원)				
		3,000		
		1,600		
		1,100		
		500		
		1,700		
		1,200		
		500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생산시설 대표 ○○○ (인)

확인자 : 운영법인 대표 ○○○ (인)

※ 상세 입력 방법 뒷장의 '작성방법 안내' 참고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 「기본 현황」 및 「연간 매출 및 수익 예상」

- 모든 유형의 시설이 의무 작성 필요

- 1) 시설에서 생산(또는 서비스 제공) 가능한 최대 물량 추정치.
서비스(용역 등)의 경우 연인원 기재
- 2) 생산 가능 능력과 별개로 실제 예상되는 판매량.
서비스(용역 등)의 경우 연인원 기재
- 3) 예상 판매량에 따른 매출 예상금액 기재
- 4) 원부자재구입, 외주비, **인건비**, 운영제 경비 등 생산시설이 집행할 전체 금액
- 5) 지정심사기준 4-마-2)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외주 및 하청
(예상)금액 기재
- 6) 일반 업체와의 외주 및 하청 (예상)금액 기재

○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 목적사업 사용계획」

- ‘장애인복지단체’에 한하여 의무 작성

- 6) 기본현황란에 기재된 법인의 주요목적사업 중에서 기재
- 7) 사용액의 합계는 ‘연간 수익 예상액’과 일치되어야 함
- 8) 단위 목적사업 외에 목적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인
경비 보조 내역 기재

○ 본 자료는 향후 사후관리 및 재지정심사 시 점검기준으로 활용되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생 산 공 정 별 직 무 배 치 도

○ 시 설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신청품목 :

○ 작성일 : 0000. 00. 00.

연번	공정사진	공정명	공정설명	비중 (%) ¹⁾	설비	근로자 배치 ²⁾		
						성명	장애 유형	직무
1	사진	디자인, 편집	인쇄 원고 디자인 및 편집	30	PC, 디자인편집프 로그램	김00	지체	편집디자인
2	사진	인쇄	인쇄출력	30				
3	사진							
4	사진							
5	사진							

1) 전체공정을 100%일 때 각 단위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

2) 근로자배치 시 반드시 개인별 직무 기재, 비장애인 경우 장애유형에 “없음” 표기

직접생산 장비 목록

○ 시설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신청품목 :

○ 작성일: 0000. 00. 00.

연번	품목	설비명 ¹⁾	모델명	자가/임대	취득일 (0000-00-00)	취득비용/ 임대비용 (단위:원)	기증여부 (y/n) *공증 필수	용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 생산설비 명칭 기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1	인쇄물	4도 오프셋	jprint40	자가	2020-1-1	400,000,000	N	인쇄기기	오프셋 인쇄기
2		자동유압재단기	IDEA/5560	자가	2020-1-1	8,000,000	N	종이의 폭과 길이를 재단하는 설비	재단기
3		무선제본기	GS4320B	자가	2020-1-1	0	Y	인쇄된 종이를 풀과 본드를 이용해 제본하는 설비	제본기
4		디지털마스터	nbo123	임대	2020-1-1	300,000	-		
5									
6									
7									
8									
9									

* 신청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직접생산장비 전부를 기재

- 직접생산 장비란, 신청품목을 생산하는데 있어 주요 생산공정에 이용되는 모든 장비를 뜻 함.

* 작성 방법

1)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또는 고정자산관리대장 또는 비품대장)에 등록된 생산설비 명칭을 기재

본 시설은 상기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른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원부자재 목록

원 부 자 재 목 록

○ 시 설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신청품목:

○ 작성일: 0000. 00. 00.

연번	품목	원부자재명	매입처 ¹⁾	단위 ²⁾	단가 (단위:원)	용도	비고
1	복사용지	아트지 250g 1R(국전)	한국제지	연	100,000	표지종이	
2	복사용지	미색모조 A4 80g 1R(소국전)	한국제지	box	30,000	내지종이	
3							
4							
5							
6							
7							
8							
9							
10							

* 신청품목에 대한 원부자재 품목 전부를 기재

* 작성 방법

1) 매입처 :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상의 명

2) 단 위 : 원부자재별 단위